
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
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세요!

온라인 신청
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,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자격

제1순위 상속인(자녀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부모, 배우자)
*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

신청방법

정부24(www.gov.kr) 접속 →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→ 신청서 작성
→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→ 접수처(주민센터)에서 확인·접수 → 접수증 출력

방문 신청
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?

금융내역(예금·대출·보험·퇴직공제금 등)·토지·건축물·자동차·세금(채납액·미납액·환급액)·
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인·피후견인재산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



신청자격

- 상속인 : 제1순위(자녀, 배우자), 제2순위(부모, 배우자), 제3순위(형제, 자매) / 대습상속인, 실종선고자의 상속인
※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- 후견인 :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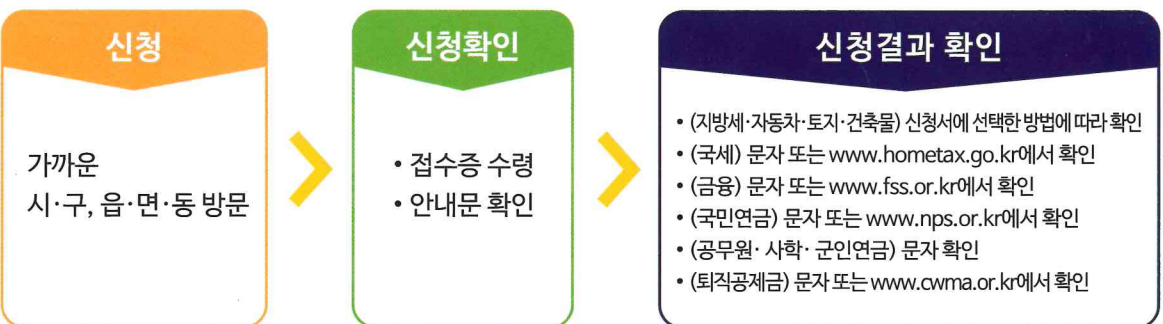
신청장소

가까운 시·구, 읍·면·동(주민센터)

구비서류

- (사망자 재산조회시)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
- (피후견인 재산조회시)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(한정)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

처리절차



☑ 문의처 : (금융내역)금융감독원 ☎1332, (국세)국세청 ☎126, (국민연금)국민연금공단 ☎1355
(공무원연금)공무원연금공단 ☎1588-4321, (사학연금)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☎1588-4110
(군인연금)국방부 ☎1577-9090, (토지·건축물·지방세·자동차) 가까운 시·구청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)건설근로자공제회 ☎1666-1122

**유의사항 : 이 서비스는 금융·토지·건축물·자동차·세금·연금 등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.
그 밖의 재산은 신청인(본인)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**